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08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080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744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걸

변론 종결 2022. 10. 12.

판결 선고 2022. 11.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744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가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601,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파주시, 발행일 2019. 2.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154,200,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4,20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C가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601,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파주시, 발행일 2019. 2.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6,767,123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C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들의 일부 중복 가) 관련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3,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의 주문 중 C에 대한 부분(위 판결문상의 연대관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가 인용된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C에 대한 제1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76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의 주문은 "피고 C는 원고에게 217,863,01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그 판결이유에 기재된 위 "217,863,012원"의 산출 과정은 " $217,863,012원 = 143,342,465원 [= 200,000,000원 \times 0.3 \times 872일(2012. 1. 9. \sim 2014. 5. 31.)/365] + 74,520,547원 [= 160,000,000원 \times 0.2 \times 850일(2012. 1. 31. \sim 2014. 5. 31.)/365]$ "이다.

(3) 원고의 C에 대한 제1, 2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6464 판결(이하 '3판결'이라 한다)의 주문은 "피고 C는 원고에게 899,735,423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그 판결이유에 기재된 위 "899,735,423원"의 산출 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797,906,849원	$= 360,000,000원 + 286,849,315원 (= 200,000,000원 \times 0.3 \times 1,7452) 2012. 1. 9.[제3판결문 제6쪽 각주 1)에 기재된 '2012. 1. 19.'$ 은 '2012. 1. 9.'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6. 10. 18.까지/365) + 151,057,534원(= 160,000,000원 $\times 0.2 \times 1,7233) 2012. 1. 31.$ 부터 2016. 10. 18.까지/365)
제2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101,828,574원	$= 217,863,012원 \times 0.2 \times 8534) 2014. 6. 19.$ 부터 2016. 10. 18.까지/365
합계	899,735,423원	$= 797,906,849원 + 101,828,574원$

다) 제3판결 중 일부 중복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판결은 제1판결의 원금에 대하여 2014. 5. 31.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고, 제3판결은 제1판결 및 제2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6. 10. 18.까지 각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제3판결 중 아래의 부분은 제1판결 또는 제2판결과 각 중복되고 있다.

(2) 제3판결 주문 중 "360,000,000원5) 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1판결 주문은 "3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따라서 제3판결 중 위 부분 전부가 제1판결에 포함되어 중복되고 있다.

(3) 제3판결 주문 중 "286,849,315원(= 200,000,000원 × 0.3 × 1,7456) / 365)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 및 "151,057,534원(= 160,000,000원 × 0.2 × 1,7237) / 365)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제2판결 주문에 기재된 217,863,012원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4. 5. 31.까지 발생한 연 30%의 지연손해금 143,342,465원 및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4. 5. 31.까지 발생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74,520,547원의 합계"이고, 제2판결 주문은 "217,863,01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따라서 제3판결의 위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4. 5. 31.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 및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4. 5.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제2판결에 포함되어 중복되고 있다.

(4) 결국 제3판결 중 제1판결 또는 제2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①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143,178,082원(= 200,000,000원 × 0.3 × 87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76,361,643원(= 160,000,000원 × 0.2 × 871/365)", ③ "101,828,574원[= 217,863,012원 × 0.2 × 853일(2014. 6. 19.부터 2016. 10. 18.까지)/365]"의 합계인 321,368,299원(= 143,178,082원 + 76,361,643원 + 101,828,574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다8).

라) 제3판결 중 일부 중복 부분의 효력

(1) 비록 제3판결 중 앞서 본 일부 중복 부분이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후소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인 점, ② 제3판결은 확정된 제1판결 및 제2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6. 10. 18.까지 각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청구하는 취지의 원고 청구에 대한 판결이므로, 해당 법원으로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된 제1판결 또는 제2판결과 동일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제3판결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판결 또는 제2판결과 각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에 대하여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은 제3판결의 소송 당시 원고로서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제3판결 중 앞서 본 일부 중복 부분에 기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중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제3판결 중 앞서 본 일부 중복 부분에 기한 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결국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제3판결 중 앞서 본 일부 중복 부분에 기초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고, 제3판결 중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1판결 또는 제2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앞서 본 "321,368,299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이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총당 가)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은

① 제1판결상 "3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제2판결상 "217,863,01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③ 제3판결상 "321,368,299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4호증, 을 제1, 2,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2018. 8. 21.경 K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중 2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받은 사실, ㉡ 원고가 C의 I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9100)을 받아 2018. 10. 16. I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 원고가 L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478)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21타채525958)을 받아 2021. 9. 16. L가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에서 받을 배당금 209,144,187원을 수령한 사실, ㉣ 원고가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에서 2022. 8. 30.경 898,295,969원을 배당받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각 변제금액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위 각 변제 당시 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충당한다. 위 가)항의 ①, ②, ③ 채권은 최초 변제일인 2018. 8. 21. 당시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충당한다(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원칙적으로, 이율이 연 30%로 가장 높은 ① 채권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표에서 '제1판결1'이라 한다)에 1순위로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① 채권 중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표에서 '제1판결2'라 한다)과 ② 채권은 이율이 연 20%로 같아 그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① 채권 중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2순위로 충당하고, 이후 ② 채권에 3순위로 충당하며, 마지막으로 이율이 연 15%로 변제이익이 가장 적은 ③ 채권에 4순위로 충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원칙적인 충당 순서 중 지연손해금 사이의 충당 순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변경한다. 즉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피보전채권 중 제2판결 채권은 제1판결의 각 원금에 대하여 2014. 5. 31.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것이고, 제3판결 채권은 제1판결 및 제2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6. 10. 18.까지 각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2판결상 '제1판결의 각 원금에 대하여

2014. 5. 31.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9) '은 제2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제3판결상 '제1판결의 각 원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제2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4. 6. 19.부터 2016. 10. 1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10)은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연손해금보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나머지 지연손해금보다 먼저 충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자 계산은 '총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 채권 정보

1	제1판결1	200,000,000원	2012.01.09.	30	원금, 지연손해금
2	제1판결2	160,000,000원	2012.01.31.	20	원금, 지연손해금
3	제2판결	217,863,012원	2014.06.17.	20	지연손해금
4	제3판결	321,368,299원	2016.11.15.	15	지연손해금

※ 총당 정보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2	209,972,602	209,972,602	74,520,547	-	135,452,055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3	182,288,668	182,288,668	-	217,863,012.1.9.부터 2014.5.31.까지 지연 손해금 143,342,468 제2판결의 지연 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채권 중 2012.1.9.부터 2014.5.31.까지 지연 손해금 143,342,468	182,288,668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5월 및 제1 판 결2 채 권 중 20 12. 1. 31. 부 터 20 14. 5. 31. 까 지 지 연 손 해 금 74, 52 0,5 47 원 의 합 계 이 다. 이 로 써 제2 판 결 의 지 연 손 해 금 발 생 의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원천이 되는 제1판결의 확정지연 손해금 부분은 모두 소멸하고, 2018. 8. 22. 부터는 제2판결에 기한 지연 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 7,3 15, 06 8	1 9 5 , 4 7 9 , 4 5 3	-	200,000,000	201,835,615
				지 아 니 한 다.				
4	85,184,610	85,184,610	-	52, 13 6,9 88 12) 제1 판 결1 채 권 에 충 당 되 는 19 5,4 79, 45 3원 중 20 12. 1. 9. 부 터 20 14. 5. 31. 까 지 지 연 손 해 금 14 3,3 42, 46 5원 을	2 6 9 , 2 3 1 , 3 1 1	85,184,610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발생의 원천이 되는 부분이다. 이로써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발생의 원천이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되는 제1,2판결의 확정지연 손해금 합계 321,368,299원 중 52,136,988원이 소멸하고, 2018.8.22.부터는 제3판결에 기한지연 손해금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은 269,231,311원 (= 321,368,299원 - 52,136,988원)에 대하여 발생한다.				
2018.10.16 .	140,000,000	1	9,205,479	211,041,094	91,041,094 (13%)	-	200,000,000	120,000,000
				제3판결의 지연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1채권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6.1.부터 2016. 10. 1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3,178,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082원 = 에서 앞서 총당한 52,136,98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변제금 140,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000원			
				중 나머지			
				48,958,906원			
				의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제1판결 2채권 중 "160,000,000원 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10.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76,361,643원 =	충당한다.			
2	4,909,589	140,361,644	48,958,906	-	91,402,738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49,547,945,316,000,000	-	200,000,000	201,835,615
3	182,288,668	-	-	-	-	182,288,668		
4	6,196,008	91,380,618	-	140,000,000	140,000,000	91,380,618		
2021.09.16 .	209,144,187	1	175,232,876	295,232,876	79,912,876,140)	-	200,000,000	215,320,000
					변제금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195,479,453			
				209,144,187원을 먼저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2채권			

2018.08.21 .	270,000,00 0	1	397,315,06 8	39 7,3 15, 06 8	1 9 5 , 4 7 9 , 4 5 3	-	200,000,00 0	201,835,61 5
				중 " 1 6 0 , 0 0 0 , 0 0 0 원 에 대 하 여 2 0 1 4 . 6 . 1 . 부 터 2 0 1 6 . 1 0 . 1 8 . 까 지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76,361,643원에 앞서 48,958,906원의 총합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하 였 으 므 로 · 나 머 지 27,402,737 원 에 충 당 한 다 · 또 한 제 3 판 결 의 지 연 손 해 금 발 생 의 원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천이 되는 제2판결채권 101,828,574원 [= 217,863,012원] × 0.2 ×			

2018.08.21 .	270,000,00 0	1	397,315,06 8	39 7,3 15, 06 8	1 9 5 , 4 7 9 , 4 5 3	-	200,000,00 0	201,835,61 5
					8 5 3 일 (2 0 1 4 . 6 . 1 9 . 부 터 2 0 1 6 . 1 0 . 1 8 . 까 지) / 3 6 5] 에 총 당 한 다 . 나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머지			
				79,912,876원 (= 209,144,187원 - 27,402,737원 - 101,)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828,574원) 은 제1판결1채권에 충당한다. 이로써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2018.08.21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	200,000,000	201,835,615
				되는 제 1, 2 판결의 확정 지연손해금인 모두 소멸하고, 2021. 9. 17. 부터는 제 3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5,479,453	-	200,000,000	201,835,615
				판결에 기한 지연 손해 금 은 더 이 상 발 생 하 지 아 니 한 다 .				
2	93,457,534	184,860,272	27,402,737	-	160,000,000	157,457,535		
3	182,288,668	101,828,574	-	-	-	182,288,668		
4	56,613,935	147,994,553	-	129,2		147,994,553		

2018.08.21 .	270,000,000	1	397,315,068	397,315,068	199,479,453	-	200,000,000	201,835,615
				31,311	-			
2022.08.30 .	898,295,969	1	57,205,479	272,525,479	200,000,000	-	-	-
2	30,509,589	187,967,124	87,067,124	9,348,719	-			
3	80,460,094	80,460,094	-	-	-	-		
4	147,994,553	147,994,553	-	-	-	-		

라) 최종 변제 후 위 채권들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2. 10. 12. 기준 채권액은 제1판결2 채권의 원금 잔액 150,651,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2. 10. 12.까지 43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49,591원의 합계 154,200,872원이다.

마) 다만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원고가 I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에서 배당받은 1억 4,000만 원도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1억 4,000만 원을 배당받긴 하였으나,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을 뿐 아니라 I이 원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2009. 5. 8.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연 30%이었고, 복리약정으로 인하여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므로(같은 법 제5조), 대여금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연 3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피보전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확정판결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를 두고 복리약정에 해당한다거나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19. 2. 19. 존재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154,200,872원 상당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의 '원고에게'를 'C에게'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3의 나.항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 1) 이와 같이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2)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2590)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배당금 166,767,12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166,767,123원 중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154,200,872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C가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154,200,8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4,20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공도일

판사오영상

판사최항석

1) 원고의 2021.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67,767,12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66,767,123원'의 오타임이 분명하므로, '166,767,12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2012. 1. 9.[제3판결문 제6쪽 각주 1)에 기재된 '2012. 1. 19.'은 '2012. 1. 9.'의 오타로 보인다]부터 2016. 10. 18.까지

3) 2012. 1. 31.부터 2016. 10. 18.까지

4) 2014. 6. 19.부터 2016. 10. 18.까지

5) 제3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899,735,423원" 중 일부이다(위 표의 계산내역 참조). 아래 (3)항의 "286,849,315원" 및 "151,057,534원"도 마찬가지이다.

6) 2012. 1. 9.부터 2016. 10. 18.까지

7) 2012. 1. 31.부터 2016. 10. 18.까지

8) ①, ② 부분은 제1판결의 원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것이고, ③ 부분은 제2판결에 기하여 2014. 6. 19.부터 2016. 10. 18.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개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9) "217,863,012원 = 143,342,465원[= 200,000,000원 × 0.3 × 872일(2012. 1. 9. ~ 2014. 5. 31.)/365] + 74,520,547원[= 160,000,000원 × 0.2 × 850일(2012. 1. 31. ~ 2014. 5. 31.)/365]"이다.

10) ①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3,178,082원(= 200,000,000원 × 0.3 × 871/365.)", ②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76,361,643원(= $160,000,000\text{원} \times 0.2 \times 871/365$)", ③ "101,828,574원[= $217,863,012\text{원} \times 0.2 \times 853\text{일}(2014. 6. 19.\text{부터 } 2016. 10. 18.\text{까지})/365]$ "의 합계인 321,368,299원(= 143,178,082원 + 76,361,643원 + 101,828,574원)이다.

11) 제2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1 채권 중 2012. 1. 9.부터 2014. 5. 31.까지 지연손해금 143,342,465원 및 제1판결2 채권 중 2012. 1. 31.부터 2014. 5. 31.까지 지연손해금 74,520,547원의 합계이다. 이로써 제2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의 확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모두 소멸하고, 2018. 8. 22.부터는 제2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다.

12) 제1판결1 채권에 충당되는 195,479,453원 중 2012. 1. 9.부터 2014. 5. 31.까지 지연손해금 143,342,46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부분이다. 이로써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 2판결의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321,368,299원 중 52,136,988원이 소멸하고, 2018. 8. 22.부터는 제3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269,231,311원(= $321,368,299\text{원} - 52,136,988\text{원}$)에 대하여 발생한다.

13)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1 채권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 143,178,082원"에서 앞서 충당한 52,136,98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변제금 140,000,000원 중 나머지 48,958,906원은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2 채권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76,361,643원"에 충당한다.

14) 변제금 209,144,187원을, 먼저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판결2 채권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0. 1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76,361,643원"에 앞서 48,958,906원을 충당하였으므로, 나머지 27,402,737원에 충당한다. 또한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2판결 채권 101,828,574원[= $217,863,012\text{원} \times 0.2 \times 853\text{일}(2014. 6. 19.\text{부터 } 2016. 10. 18.\text{까지})/365]$]에 충당한다. 나머지 79,912,876원(= $209,144,187\text{원} - 27,402,737\text{원} - 101,828,574\text{원}$)은 제1판결1 채권에 충당한다. 이로써

제3판결의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천이 되는 제1, 2판결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하고, 2021.

9. 17.부터는 제3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다.